

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[별표 3]

산불 대응 단계 기준(제20조 관련)

대응 단계 기준	초기 대응	확산 대응 1단계	확산 대응 2단계
피해 면적(산불 영향구역)	10헥타르 미만	10~100헥타르 미만	100헥타르 이상
기상 상태(평균 풍속)	초속 3미터 미만	초속 3~11미터 미만	초속 11미터 이상
진화예상시간	5시간 미만	5~48시간 미만	48시간 이상
시설피해	피해 우려 없음	주택 등 주요 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	주택 등 주요 시설 20동 이상 피해 우려

비고

1. 피해 면적(산불영향구역)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를 발령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가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(확산 대응 2단계까지)로 발령할 수 있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산불발생 지역의 시설 전체 규모가 20동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.
4. “주택 등 주요 시설”이란 주택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된 국가유산,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.